

## 2. 법인자본세(corporation capital tax)

법인자본세는 일반법인의 경우 조정불입 자본(adjusted paid-up capital)의 0.3%의 세율로 과세된다. 은행과 신용회사 및 신용조합은 3%의 세율로 과세된다. 다만, 은행 등의 순불입자본(net paid-up capital)이 10억 달러 이하이거나 본사가 British Columbia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%의 세율이 적용된다. 가족농장, 비영리법인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.

## 3. 사회서비스세(social service tax)

사회서비스세의 동산(tangible personal property)의 구매 또는 임차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격 또는 임차료의 7%로 과세한다. 주류 구매에 대해서는 10%의 세율이 적용되며, 승용 또는 승합차에 대해서는 7~10%의 세율이 적용된다.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자동차의 가격이 32,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7%, 32,000~34,000달러는 9%, 34,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%로 과세한다. 과세대상 물건의 판매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의 형태로 징수하여 납부한다.

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.

- 1) 식료품, 의약품 등 기초 생필품(basic necessities of life)
- 2) 농업, 어업, 광업을 사용하는 물품
- 3) 산업용 안전용품 또는 구명자켓 등

일반 안전용품

- 4) 건물의 단열재, 풍력 또는 태양열 이용 설비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물질 또는 설비

환경사업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납과 산이 함유된 배터리(lead-acid battery)와 자동차 타이어에 대해서는 정액의 부담금이 부과된다.

또한 교통사업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자동차의 단기간 렌트에 대해서도 부담금이 부과된다.

## 4.. 부동산양도세(real property transfer tax)

부동산양도세는 부동산의 양도자에 대해 과세한다. 과표는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된다. 세율은 거래가격이 200,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1%, 거래가격이 200,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,000달러 초과금액의 2%로 누진과세한다.

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- 1) 개인의 주된 주택 또는 레크리에이션 용 주택의 양도
- 2) 가족 농장(family farm)의 양도
- 3) 문서로 된 이혼 합의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부부간의 재산 양도
- 4) 지방정부, 등록된 자선기관 또는 교육 기관에 대한 재산 양도
- 5) 제대군인 토지법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재산 양도 등